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517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5170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43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43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가 2018. 12.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3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가 2018. 12.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2019. 1. 18. 접수 제2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3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1. 18. 접수 제2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통정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로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 관련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C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회사는 이 사건 증여 일자 이후인 2018. 12. 28.경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③ 주채무자인 소외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들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가 F조합 전무로 오래 근무하여 금융기관의 법적조치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연체이자 지급 등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를 통정허위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 판사 서경원

별지